

입법의견조사 97-2

입법의견 동향분석

1997. 8.

研究者 : 宋永仙 (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 | |
|---|----|
| I. 조사목적 및 현황 | 9 |
| II. 분야별 입법의견동향(1997.3.1.~1997.5.31) | 12 |
| ◎ 헌 정 | 12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 『헌법』 개정의견 | |
| ◎ 통일·외교 | 16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 ◎ 국 방 | 17 |
| 『병역법』 개정의견 | |
| ◎ 일반행정 | 18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 청문회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의견 | |

『행정심판법』 개정의견

◎ 내무·지방행정 20

『소방법』 개정의견

『주민등록법』 개정의견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문화·공보 22

『관광진흥법』 개정의견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의견

◎ 교육·학술 23

『교육공무원법』 개정의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의견

『학원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노 동 25

『근로자파견법(가칭)』 제정의견

『노동위원회법』 개정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견

◎ 재정·경제 27

『공기업을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규제개혁기본법(가칭)』 제정의견

금융개혁관련 입법의견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담합관련 입법의견
- 『보험업법』 개정의견
-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의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여신전문금융업법(가칭)』 제정의견
-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의견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지역신용보증조합법(가칭)』 제정의견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의견

◎ 통상 · 산업 39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산업표준화법』 개정의견
- 『석탄산업법』 개정의견

◎ 농림 · 해양 42

- 『수산업법』 개정의견

◎ 건설 · 교통 42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개정의견

- 『도시계획법』 개정의견
- 『도시재개발법』 개정의견
- 『사찰부동산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차고지 확보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견

◎ 과학기술 · 정보통신 45

- 『전기공사업법』 개정의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의견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견

◎ 환 경 47

- 『대기업 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쓰레기원천감량관련 입법의견
- 『폐기물관리법』 개정의견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보건 · 복지 50

- 『국민연금법』 개정의견
- 복권종합관리를 위한 입법의견
- 『생활보호법』 개정의견
- 『약사법』 개정의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의료법』 개정의견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장애인복지법』 개정의견
- 『장애인의사회참여에대한차별금지법(가칭)』 제정의견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법원·법무55

- 『국가기밀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민사소송법』 개정의견
- 『소년법』 개정의견
-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특별검사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특허법원관련 입법의견
- 『형법』 개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참고자료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63

<참고자료 2>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65

<참고자료 3>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조정안 대비표 66

<주요항목색인> 70

I. 조사목적 및 현황

1. 조사의 목적과 분류방법

입법의견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법령의 형태 즉,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반영되기를 원하거나 구체화되기를 원하는 입법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 특히 일반국민의 입법의견은 자신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영역에서 입법의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는 법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 전문가의 입법의견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의 입법관계자들은 특정한 분야의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우선 이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전문가의 입법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수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즉시 파악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책무를 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의 불비 및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여 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하며, 법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편익을 위한 법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의견은 입법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목적은 일반국민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느끼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견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입법관계자인 정부나 국회에 국민의 입법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국가의 입법정책 내지 입법과정에 기여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조사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문·방송·통신·출판물 등의 매체, 관련 학회의 세미나·시민운동단체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의견, 정부 부처·정당·각종 민간단체의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하여 입법의견을 수집·분석한다.

입법의견은 조사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되고 정리될 수 있는 바, 먼저 국민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수요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야별로 분류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시 입법의 공백 내지 불비에 따른 법령제정의견과 법령과 현실의 부조화에 따른 법령개정 의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간행하는 대한민국헌행법령집의 분류체제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입법의견을 분류한다.

[입법의견 분류기준표]

| 분 야 |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
|-----------|---|
| 憲 政 |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
| 統一·外交 | 제15권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
| 國 防 |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
| 一般行政 | 제3권4행정일반 |
| 內務·地方行政 |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
| 文化體育·公報 | 제18권17문화·공보 |
| 教育·學術 |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6교육·학술(2) |
| 勞 動 |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
| 財政·經濟 |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
| 通商·産業 |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
| 農林·海洋 |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
| 建設·交通 |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I)권35수자원·토지·건설업(1), 제36(II)권35수자원·토지·건설업(2),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
| 科學技術·情報通信 | 제19권18과학·기술, 제46권43체신 |
| 環 境 | 제39(I)권39환경(1), 제39(II)권39환경(2) |
| 保健·福祉 | 제37(I)권36보건·의사(1), 제37(II)권36보건·의사(2), 제38(I)권37약사, 38사회복지(1), 제38(II)권38사회복지(2) |
| 法院·法務 |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

2. 입법의견 현황

입법의견조사 97-2호에서는 1997년 3월 1일부터 1997년 5월 31일까지 각종 언론매체, 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 총 87 건을 접수하였다. 특히 재정·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시장개방의 본격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금융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 제·개정 논의가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입법의견을 위 분류기준표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헌정, 통일·외교, 국방, 일반행정 등 16개분야로 나누고, 이를 제정의견과 개정의견으로 재분류하였는 바,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입법의견 현황

| 분 야 | 건 수 | 제정의견 | 개정의견 |
|-------------|-----|------|------|
| ◎ 헌 정 | 4 | . | 4 |
| ◎ 통일·외교 | 2 | . | 2 |
| ◎ 국 방 | 1 | . | 1 |
| ◎ 일반행정 | 5 | 1 | 4 |
| ◎ 내무·지방행정 | 3 | . | 3 |
| ◎ 문화·공보 | 3 | . | 3 |
| ◎ 교육·학술 | 4 | 1 | 3 |
| ◎ 노 동 | 3 | 1 | 2 |
| ◎ 재정·경제 | 16 | 7 | 9 |
| ◎ 통상·산업 | 5 | 1 | 4 |
| ◎ 농림·해양 | 1 | . | 1 |
| ◎ 건설·교통 | 9 | 2 | 7 |
| ◎ 과학기술·정보통신 | 3 | . | 3 |
| ◎ 환 경 | 6 | . | 6 |
| ◎ 보건·복지 | 11 | 2 | 9 |
| ◎ 법원·법무 | 11 | 2 | 9 |
| 총 건 수 | 87 | 17 | 70 |

II. 분야별 입법의견동향(1997.3.1.~1997.5.31.)

헌 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의견

- 선거공영제 확대
 - 타락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으로 모든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이에 선행하여 선거운동 방식을 개선하여 각종 선거의 TV토론을 활성화하며, 대선에 합동연설회를 도입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박찬욱 서울대 교수, 국민일보 97.5.2, 5면).
 - ※ 「입법의견조사」 제95-2호(80~81면) · 제95-4호(56~57면) · 제96-1호(15면) · 제96-2호(16면) 참조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 부패방지의 법적보완
 - 현행 『형법』상 공직자의 뇌물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공직사회에 무분별한 선물, 향응, 이익 수수 행위 등이 만연되고 있는 바, 『공직자윤리법』에 내외국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선물과 향응, 이익 중 건전한 사회관행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과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공직자는 현금의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법률로 허용되는 금액과 경조사비만 받도록 함(무등일보 해설, 97.3.2).
 - 공직자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는 이익(금품이나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비위 공직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공직자는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개정안 제15조)"는 내용의 '금지된 이익 수령죄'를 신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 그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문화일보 종합, 97.4.2, 1면).

■ 재산 불성실신고자 공개

- 최초의 재산등록이후 정기변동 신고시에도 변동분이 아닌 소유재산 전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현행 3개월로 된 실사기간도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대상 친족범위를 조정하여야 함(공직자윤리위원회, 국제신문 97.3.1).

※ 「입법의견조사」 제6호(66면)·제11호(65면)·제12호(62면) 참조

『정치자금에관한 법률』 개정 의견

■ 정치자금법의 개선

- 익명의 자금기부를 보장하고 있는 '정액영수증제'는 여야 모두를 위한 음성자금의 루트가 되고, 특정 정당을 지명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지정기탁금제'는 여당에 편중되어 합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고 있는 바, △익명성기부제의 완전폐지 △기탁금 제도의 완전폐지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 처벌 △후원회제도의 활성화 △법인기업의 기부 금지 △선관위등록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의 의무화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기부 의무화와 함께 △선관위가 정치자금 수수자와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3개월마다 공개하여 정치자금을 실명화하여야 함(한국시민단체협의회·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한국일보 97.5.27, 15면).

※ 「입법의견조사」 제4호(23면)·제6호(68면)·제8호(66~67면)·제9호(86면)·제11호(69~70면)·제12호(69~70면)·제13호(46~47면)·제94-1호(48~49면)·제94-4호

(76면) · 제94-5호(87~88면) · 제95-2호(81~82면) · 제95-4호(57~58면) · 제96-1호(16면) · 제96-2호(17~18면) · 제97-1호(17~20면) 참조

■ 정치구조개선방안 비교(한국일보 97.4.28, 4면)

| 구분 | 선거법 | 정치자금법 | 정당법 |
|------|--|---|--|
| 신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공영제 확대 - 대중매체토론 활성화 및 군중집회 축소 - 기부행위 제한기간 연장 -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처벌규정 신설 - 국고보조금 감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당→시·도지부 사무처→중앙당의 3단계중 1단계 축소 장기검토 - 당원의 당비납부제고 방안 마련 - 지구당 유급직원축소 신중검토 |
| 국민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 - 대규모 군중집회 축소 및 대중매체토론 활성화 -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반대 - 소선거구제 고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떡값' 수수 근절방안 마련 - 지정기탁금중 일부 타당 배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당규모축소 추진 (지구당 전면 폐지문제는 찬·반 양론) |
| 자민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 - 대규모 군중집회 축소 및 대중매체토론 활성화 - 각종 선거홍보물 금지 -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반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탁금제 폐지 - 비지정기탁금 의석 및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 배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당폐지 광역지구당 체제로 운영 - 중앙당 규모축소 |

| | | | |
|----------------------------|--|--|---|
| <p>시 민 단 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사무소·유급사무원 수 축소 - 선거홍보물을 책자용 1종으로 통합해 선관위발송, 공영화 - 선거방송 ; 후보자, 연설회 각 10회이상 증대, 국고보조, TV토론 3회이상 실시 의무화 - 연설회 폐지, 권역별합동연설회와 TV중계 - 당원단체대회와 의정보고 ; 운동개시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허용 - 선거운동컨설팅비, 여론조사비 등 포함 엄격화 - 시민단체선거참여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이상 벌금형 받은자는 5년, 징역형 선고받은자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제한 - 해당의원의 정치자금 범위반시 소속정당도 벌금형에 처함 - 기부자 인적사항이 명기된 후원회 내역을 보고, 선관위는 이를 공개 - 개인에 대한 기부신설, 후원회를 통하도록 명시 - 소액다수 당비납부제도의 신설, 일정액규정 익명납부금지, 납부당원에 한하여 당후보경선시 투표권제한도화 - 기부자 인적사항공개조항 신설,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도 선관위 제출, 3개월마다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원투표에 의한 공직후보추천 의무화 - 공무원, 초중고 교원의 정당가입 확대 - 소속정당탈당시 최소 3개월이내 정당가입 금지 |
|----------------------------|--|--|---|

『헌법』 개정
의견

- 대통령비서실기능의 제도화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府와 동급으로 헌법적 기관인 대통령부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무회의, 총리실을 포함하는 최고 경세기구로 제도화하고, 선거로부터 국정운영, 퇴임 후의 사회봉사활동 과정에 동역할 수 있도록 함(한국공공정책학회·한국의회발전연구회 공동주최, 심포지엄 『대통령부를 바로알자』, 김광웅 서울대교수, 조선 97.5.20, 6면)
- 대통령 권한의 축소

-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행정부의 수반과 국군의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임명, 검찰, 경찰, 방송사, 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의 장에 이르기까지 임명이 가능하여서 주요 사회기관의 정치기관에 대한 견제역할이 제대로 행하여지고 있지 못한 바, 주요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철폐하는 권한의 축소로 사회 각 주요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 시민의 신문 97.5.19, 2면).

※ 「입법의견조사」 제94-1호(50면) · 제95-2호(82면) · 제95-3호(81면) · 제95-4호(58면) · 제96-2호(18~20면) 참조

통일 · 외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의견

- 5.18 유공자 예우
 - 5.18 민주화운동의 사망자와 실종자 및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사망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실종자는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당국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된 자로 규정함(국민회의, 광주일보 97.4.17).

※ 「입법의견조사」 제95-3호(82면) 참조

『남북교류협력 에관한법률』 개정 의견

- 대북지원 자의적 간섭은 쟁송대상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경제협력을 하려면 10여개가 넘는 승인·허가·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절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적 관행과는 달리 '3년 이하의 자유형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나치게 중과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

고 시행령은 다시 장관에게 재위임하여 '포괄적 위임금지'나 '재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평화통일·민족화해를 저해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규제위주의 법률은 '남북 화해·불가침·협력·교류'를 위하여 92년에 체결된 '남북한기 본합의서'와 충돌하는 것으로 '신법우선 원칙'에 근거하여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녹색연합 주최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식량지원 필요성』 공청회, 시민의 신문, 97.3.10, 5면).

※ 「입법의견조사」 제7호(58~59면)·제96-1호(17~18면) 참조

국 방

『병역법』 개정 의견

■ 공익근무요원 인력관리 불합리

- 공익근무요원의 인력관리에 있어서 ①복무관리는 △중양의 경우에 병무청과 군이 분리감독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전담 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복무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실·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②복무수행은 복무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하되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는 「군사법」의 적용을 받는 등 통제권이 이원화 되어 있는 바, 이를 일원화 하기 위한 관련법의 정비 가 시급함.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후 육군보병 이병으로 전역하는 것은 취업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낳는 바,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동양일보, 97.5.14).

※ 「입법의견조사」 제2호(43면)·제3호(45~46면)·제4호(25~26면)·제7호(59면)·제10호(75~76면)·제11호(74면)·제13호(52면)·제96-2호(22~23면)·제96-3호

일반행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민간 개인정보 법으로 보호
 -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 백화점, 병원, 일반기업 등 민간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정보 보호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정보보호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조회사실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강화하고자 함(내무부, 동아일보 97.4.26, 38면).
- ※ 「입법의견조사」 제1호(42면)·제8호(73~74면)·제10호(79면)·제18호(88~90면)·제94-3호(88면)·제96-2호(23~24면)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공적기관의 법 적용대상 포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개대상 기관으로 입법·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 공적인 성격을 지닌 대부분의 기관을 포함시키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총무처, 문화일보 97.4.8, 2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견

- 민원 1회 방문처리
 -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도입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며, 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

대 방안을 강구함. 민원행정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하도록 명시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이중 3인은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전체 의결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총무처, 한국경제신문 97.5.15, 2면).

※ 「입법의견조사」 제8호(74면)·제13호(56면) 참조

**청문회제도개
선을 위한
입법의견**

- 청문회제도의 개선
 - 증인에 대한 형사책임면제를 제도화하고, 국정조사증언거부시 사유를 명확화하며, 불출석죄·증언거부죄 등의 형량을 상향 조정함. 수사기록·공판기록의 검증을 명시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동원한 예비조사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청문회제도를 개선하여야 함(야권, 문화일보 97.4.11, 5면).

**『행정심판법』
개정건의**

- 예규시정요구권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
 - 상위법령의 취지와는 다르게 제정된 각 부처의 예규·훈령으로 인하여 국민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권(규제심사권)을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별사안에 대한 심판 외에 위법·부당한 하위법규에 대한 심판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법제처, 문화일보 97.5.8, 2면).

- 행정청의 재결불복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행

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증거조사 및 사전심리후 재결을 할 경우 청구인이 위 재결에 불복하면 상급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기타 관계 행정청은 재결결과에 기속되어, 불복할 수 없었는 바, 행정청도 청구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아 재결청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고자 함(행정쇄신위원회, 법률신문 97.4.28, 3면).

- 행정청이 재결청의 인용재결에 불복하는 것은 재결청의 인용결정이 행정의 내적 감독작용임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행정청은 재결에 불복할 수 없음(대한변호사협회, 법률신문 97.4.28, 3면).

내무 · 지방행정

『소방법』 개정 의견

- 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 『소방법시행령』 제28조는 연면적 33제곱미터의 소방대상물의 경우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비상경보설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비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비하고, 법 제32조가 설치된 소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결과의 조작, 허위사실보고에 대한 제어방법이 미비한 바, 이에대한 보완이 요망됨(국제신문 해설, 97.5.7)

※ 「입법의견조사」 제94-2호(81면) · 제95-1호(84~85면) 참조

『주민등록법』 개정 의견

-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 행정능률과 불순분자 색출, 인적자원관리의 확립이 주민등록

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바, 주민의 동의와 법률적 근거없는 통합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시행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라 할 것임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최병모 변호사, 제주일보 97.5.13).

-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운영관리자로부터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원동호 성균관대 교수, 제주일보 97.5.13).
- 전자주민카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소지가 높고, 정보화사회의 감시·통제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명제도를 간소화하고 신분증명에 관한 사회적 관행을 국제수준화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통합적 『사생활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감시통제의 우려가 있는 공안전산망을 공개하여야 함(문용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제주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한겨레 97.5.6, 16면).
-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제도로써, 신분확인제도인 주민등록증, 자격을 인증하는 운전면허증, 복지행정서비스의 일환인 의료보험증과 국민연금증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는 것은 법률 체계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음(김기중 변호사, 내무부 주최 『정보지배사회에서의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그 위험성』 공청회, 「전자주민의카드의 위험성」 발표문, 97.4.24).

※ 「입법의견조사」 제11호(77면)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 중앙·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권 부여
- 현재 심의기능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

를 통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며, 조정위원회 11명의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선거권자 5%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특정조례의 제·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내무부, 한국일보 97.4.24, 37면).

※ 「입법의견조사」 제2호(43~44면)·제5호(49면)·제10호(79~80면)·제13호(57~58면)·제94-2호(82~83면)·제94-6호(85면)·제95-2호(86~89면)·제96-1호(23면)·제96-2호(29~30면)·제96-3호(23~26면) 참조

문화·공보

『관광진흥법』

개정의견

- 카지노업장내 슬롯머신 설치 허용
- 점증하는 관광수지 적자폭과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카지노 업계의 영업이 부진한 현실을 감안하여 카지노 업장내 슬롯머신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제주일보, 97.5.31).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문화재 사전 지표조사제 도입
- 현재는 공사의 진행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구제발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의 차원에서 모든 공사의 시작전에 문화재의 매장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지표조사제'를 도입·실시하도록 함(문화재관리국, 매일신문 97.5.2).
- ※ 「입법의견조사」 제8호(82면)·제11호(84~85면)·제12호(80면)·제13호(63면)·제94-3호(95면)·제96-2호(31면)·제96-3호(28면)·제97-1호(21면) 참조

『음반및비디오
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의견

- 영업시간의 자율화
 -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이 24시간 가능한 관광특구에서 비디오 대여점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관광특구라는 지역의 특성과 업종의 특성상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업시간을 업소의 자율에 위임하도록 법규개정 하여야 함(비디오대여업협회 속초시지회, 강원일보 97.3.14).
 - 휴대용 액정게임기의 판매 규제
 - 휴대용 액정게임기는 비디오게임기로 분류되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입판매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다마고치' 등의 액정게임기는 완구류로 분류되어 심의없이 유통되고 있는 바, 일본어 게임이 구비된 가정용 게임의 경우 수입자체가 금지되는 점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다마고치' 등의 휴대형 액정게임기는 현재 완구류에서 게임기로 분류조정 되어야 함(전자신문, 97.5.20).
- ※ 「입법의견조사」 제94-6호(93면) · 제95-2호(93~95면) · 제96-3호(29~30면) · 제95-4호(73면) 참조

교육 · 학술

『교육공무원법』
개정의견

- 교수재임용제 개선
 - 현행 교수 재임용제가 학교 및 재단측에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악용의 소지를 낳고 있는 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법률 사항으로 규정하여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현행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새로 구성할 '교원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교수 재임용 관련 분쟁을 포함하여 부당

한 재임용 탈락사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함(교육부, 한겨레 97.5.22, 1면).

※ 「입법의견조사」 제94-1호(54면) · 제95-3호(65면) · 제96-2호(34~35면) · 제96-3호(32면) 참조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대립

-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며, 교육위원 선출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함(교육부, 제주일보 97.5.31).

- 교육감이 교육위원직을 겸하고 위원선출에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개입함은 교육자치의 후퇴이고,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의 전환은 교육을 내무행정에서 종속시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임(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 제주일보 97.5.31).

※ 「입법의견조사」 제3호(55~56면) · 제8호(86~87면) · 제12호(82면) · 제94-6호(93~94면) · 제95-1호(89면) · 제96-2호(39~40면) 참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의견

■ 직업능력인증제 도입

- 언어능력, 정보 및 수리계산능력, 문제해결능력, 경제이해능력 등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직업능력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체의 사원채용이나 승진에서 기존의 학력을 대신하는 인사관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교육부, 한겨레 97.5.28, 2면).

『학원폭력방지
법(가칭)』
제정의견

- 교내순찰경찰제 도입
 - 학원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교내순찰경찰제'를 제도화하여 학교내 순찰경찰을 상주시켜 학생들의 폭력현장에 즉시 개입·해결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상담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이상오 국정모니터, 「국정모니터 정책과제의견」 97.4.19).
 - 학교 내외의 폭력추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학원폭력을 담당할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사건 발생시 경찰관서에 인계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하도록 함(박영룡 국정모니터, 「국정모니터 정책과제의견」 97.4.19).

노 동

『근로자파견법
(가칭)』 제정
의견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용대상
 - 노동부장관의 허가하에 근로자 파견사업을 허용하되 대상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임금과 재해보상은 파견 사업주가 맡도록 하며 근로시간, 휴식 등 구체적인 운용은 고용 사업주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역할분담을 구체화 함(노동부, 매일 경제신문 97.4.9, 1면).
 - 외국인노동자정책과 외국인노동자관련법률을 마련하여 현행 법무부, 노동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 나뉘진 고용·관리를 담당할 공익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영남일보, 97.5.1).
- ※ 「입법의견조사」 제6호(75~76면)·제95-2호(90~91면)·제95-4호(67면) 참조

『노동위원회법』
개정 의견

- 노동위원회의 발전방향
 - 노동위원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소속되어 장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공익위원에게 종류에 무관하게 업무가 배당되어 위원의 전문성을 결여하여 온 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과 조정담당으로 세분화하고, 심사관을 전원 별정직으로 하며, 각 지역 노동위원회간의 인력교류가 가능하도록 함(서울신문 97.5.22, 10면).

※ 「입법의견조사」 제94-6호(87면) 참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
의견

■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산재보험의 민영화 추진은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고 보험료율의 차등을 크게 하며, 민영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공공기관이 책임지도록하여 장기적인 재정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산재예방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이나, ①보험료율의 차등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율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고, 민영화를 통한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기업들 전체의 관리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며, ②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산재가 다발하는 영세기업의 보험료도 인상되어 이들은 산재보험의 가입조차 어려워질 것이고, ③영리추구를 최우선하는 사보험제도에서는 비영리적인 산재예방 사업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어 산재예방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산재보험은 최저생계 보장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인 바, 타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와 같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①산재보험에 국가의 지원을 증대시키고, ②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③보험료율의 차등화를 축소시키고, ④수입대체율을 상향조정하고, ⑤조직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⑥산재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을 개선하며, ⑦산재보험의 운영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박승희 성균관대 교수, 『노동』 97. 5, 28~32면).

※ 「입법의견조사」 제3호(52면) · 제96-1호(28~28면) · 제97-1호(33~34면) 참조

재정 · 경제

『공기업의경영 구조개선및민 영화에관한법 률(가칭)』 제정의견

■ 공기업 경영효율화 방안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가칭)』의 시안은 △최고 경영자를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하는 11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전에 심의하는 주주협의회를 두며, △한국통신,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의 주식 매각시 경제력 집중 억제와 소유분산을 위하여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10% 이내로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이 공기업들에 대한 주식취득에 대하여 3년 임기중 이사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부진하지 않은 경우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주무부처의 경영에 대한 업무 감독권을 폐지하고 감사원 또는 국회의 국정감사도 대폭 축소하도록 하며, 최고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들의 견제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포함하며 △전문 경영인과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스톡옵션제도나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의 내용은 전략적인 결정과 일상적인 경영활동의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지배구조의 모순은 이러한 방안의 채택으로도 재현되어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인 바,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는 ①관료들의 민영화 추진체계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고, ② 민영화 과정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③소유·지배구조의 완전한 민간 이양과 민영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

섭과 규제 철폐를 도모하고, ④독점적 공기업들의 민영화시에 경쟁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가칭)』을 기초하여야 할 것임(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실장, 한국경제신문 해설, 97.4.12, 5면).

- 4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 기본방향
 - ①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력 집중 및 1인 대주주에 의한 기업지배를 방지하며, ② 새로운 기업경영모형의 도입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하여 △선임 및 퇴임요건의 엄격화, 인센티브 강화 △경영 및 인사상의 강력한 권한 부여 △사외이사제, 목표관리시스템 등 강력한 경영권에 상응하는 경영통제제도 도입 △주무부처의 업무감독권 대폭 축소 △1인 지분한도 설정으로 소수 대주주의 기업지배 방지 △특별법의 제정 및 설립법·사업법을 개정하고, ③1인 지분한도에 따라 주식매각을 추진하여 완전민영화하되, 민영화 이후에도 1인 지분한도는 계속 적용하여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도록 함(재정경제원·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 관한법률(가칭)』 제정관련 공청회, 재정경제원 국고국 국유재산과 : 국민경제연구소 경제정책정보, 97.5.20).

『규제개혁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규제심사원 설치
 - ①부패방지의 기능을 위한 감사원과 같이 독립적인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전문성·독립성·중립성 및 추진력을 갖는 규제폐해 방지 심사기구인 '규제심사원(가칭)'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의결기구로서 '규제심사위원회'를 두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②규제심사를 실질적으로 담당

할 직원은 독립기구인 '규제심사원' 소속으로 하고, 별정직의 규제완화 전문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함. ③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규제개혁자문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규제심사원' 내의 의결기구인 규제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④불법규제, 과잉규제, 상·하위법령간 불일치로 인한 마찰적 규제 등 자의적이고 관행화된 부당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심사원장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각 관련기관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조철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나라경제』 97.6, 39~41면).

- 규제관련 법령인 현행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일 뿐 구체적 방안이 부실한 바, 규제개혁의 신빙성 확보를 위하여는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충실한 실질적인 개혁으로 규제완화에 관한 통합입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경쟁촉진'의 전제하에 사전규제인 각종 인·허가를 사후 신고로 전환하여야 함(시민의 신문 해설, 97.5.12, 3면).
- 지금까지의 규제완화가 기업불편 해소와 경기활성화의 단기적인 동기를 강조하여 규제완화작업이 단편적으로만 진행되고, 규제 자체를 하급기관에 위임·위탁함으로써 사실상 규제가 완화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바,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규제완화의 명확한 목표를 정립하고 부처이기주의를 불식하며,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 자세의 확립과 동시에 규제의 '완화' 보다는 '폐지' 또는 '철폐'로 경쟁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함(이원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나라경제』 97.6, 36~38면).

※ 「입법의견조사」 제97-1호(35~36면) 참조

금융개혁 관련
입법의견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은 대외신용도가 낮고, 자금조달 규모가 적어 해외 자금 조달이 곤란하고, 해외자금 조달을 금융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바, 은행 및 증권·종합금융회사 등에 중소기업 전용 외화 차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자금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설립을 고려함과 동시에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부도방지 등 긴급한 자금수요 충족을 위하여 대금결제도의 도입과 같은 사채시장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서상록 중소기업연구원장, 서울경제신문 97.4.17, 5면).

■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문제점

-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제1·2단계 금융개혁 추진과제는 수긍하기 어려운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 ①재벌기피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한 본격적 경영합리화의 어려움과 자본자유화시대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여신한도관리제도를 동일계열 여신한도로 대체함과, ②금융시장 진입비용의 삭감보다 시급한 금융정보화를 제2단계 과제로 정함은 이용자 중심의 개선이라는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고, ②부실금융자산의 노출을 제1단계 과제로,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모색은 제2단계 과제로 정하고 있는 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나 부실금융기관의 정비를 위한 프로그램의 준비 등 부실자산의 정리가 후순위로 밀렸으며, ④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와 신용대출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개혁방안이 미비함(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문화일보 해설, 97.4.18, 6면).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더라도 은행감독원이 분리되면 한국은행의 실질적인 독립을 저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할 경우는 중앙은행의 금융위기에방 및 관리능력이 훼손될 것임(매일경제신문 해설, 97.4.28, 2면)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보다 상위의 공통된 목표를 위하여 적절한 협조하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경제정책 효과가 무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되는 바, 예산권, 인사권, 통화정책의 실무정책 입안, 금융감독기능 등에서는 현재보다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상충문제를 협의할 통로를 확보하도록 함(전성인 홍익대 교수, 『나라경제』 97.5, 35~37면).

※ <참고자료 3>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조정안 대비표 참조
※ 「입법의견조사」 제95-2호(96면)·제97-1호(36~37면) 참조

『금융기관부실
자산등의효율
적처리에관한
법률(가칭)』
제정의견

■ 보험사의 주주제한 폐지

-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하여 유지하던 보험사의 주주자격 제한을 폐지하여, 자본금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보험사를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5대그룹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기존 부실 생명보험사를 인수·합병한 경우에 한하여 생명보험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함. 신설보험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현재 1백억원인 생활보험사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인상하고, 신용정보업의 자본금 요건을 이원화하여, 고정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용조회 업무만을 허가받으려면 1백억원 이상, 신용조회를 제외한 신용조사나 채권추심은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재정경제원, 문화일보 97.5.7, 11면).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
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

- ①긴급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금융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가칭)』로 대체입법 하여서,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용 자금 등에 대한 한시적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을 통하여 경제적 난점들을 감소해 가도록 하고, ②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자금 세탁행위는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규제하도록 함(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제실시단 ; 국민경제연구소 경제정책자료 97. 5.30).

■ 도강세 도입 여부

- 이른바 '도강세'를 도입하여 지하경제자금을 양성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고자 함은 실명전환 지연에 따른 과징금(원금의 40%)에 더하여 도강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인 바, 실명전환을 어렵게 할 것임(신한국당 주최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한겨레 97.4.30, 9면).

※ <참고자료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참조

※ 「입법의견조사」 제6호(80면)·제8호(90면)·제10호(93~94면)·제11호(87~88면)·제12호(83~85면)·제13호(68~69면)·제96-1호(31면)·제94-1호(64~65면)·제94-2호(95~96면)·제94-6호(95면)·제94-5호(105~106면) 참조

**담합관련 입법
의견**

■ 카르텔 조장요소의 개선

- 개별산업 보호, 과당경쟁 방지, 중소기업 육성, 거래질서 유지 명분의 각종 카르텔법령의 양산이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의 영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 수수료 또는 수입료를 각각의 사업자 단체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함과, △『보험업법』상의 별도 보험료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운영과정에서 보험료 담합과 같은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는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재배면적·생산량·출하량·출하시기를 조정 하도록 함과, 『축산법』상에서는 축협중앙회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 △주류업단체의 주류가격과 규격의 통일과 같은 담합 요소를 제거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함(공정거래위원회, 동아일보 기획·연재 97.3.19, 8면).

『보험업법』
개정 의견

-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무면허운전, 추월금지 등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경찰청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이용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재정경제원, 서울신문 97.5.8).
- ※ 「입법의견조사」 제4호(31면)·제95-2호(100~101면)·제96-1호(33면) 참조

『부담금관리기
본법(가칭)』
제정 의견

- 준조세의 남발 억제
 - 각종 부담금의 종류 및 부과금액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부담금제도가 특정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바, 기업활력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부담금 부과목적이 달성된 것은 즉시 폐지하고 중복부과되는 것은 단일화시키며 부과율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

정하고, 주요내용으로 △민관 공동 부담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담금의 사용용도 및 내역을 공개하며 △부담금 부과주체, 목적, 요건, 기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부담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함(전국경제인연합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건의서」, 매일경제신문 97.4.24, 2면).

『소기업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소기업의 정책적 지원 활성화
 -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소기업만을 따로 분리하여 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인력·입지·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소기업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소기업의 불안정한 경영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소기업의 폐업 또는 도산시에 소기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소기업자 공제제도'와 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의 확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소기업근로자공제제도(임금공제와 퇴직금공제)'를 도입하고, △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인 '전국소기업연합'을 육성하여 연구정책사업·정보공유사업·공동이익사업·상담자문사업·교육훈련사업·조직사업 및 대외사업을 수행하도록 함(김인재 상지대교수, 『소기업지원특별법제정의의와 소기업정책방향 공청회』 전국소기업연합 주최, 한국경제신문 기획·연재, 97.5.9, 8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의견

- 단위신협의 책임경영제 도입
 - 비상근이사장이 의결권과 업무집행권(경영권)을 독점함으로써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부실경영의 원

천이 되고 있는 바, 전문금융인 출신의 상근이사(1명)를 조합장으로 선임, 독립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함(재정경제원, 한국경제신문 기획·연재, 97.5.15, 18면).

- 현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연합회가 재정경제원 및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감사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검사·감독을 외부 감독기관에 이관하여 행하고자 함은, 규제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의 소산이며 협동조합의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신용협동조합, 한국경제신문 기획·연재, 97.5.15, 18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의견

■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 완화

- 자본금이 1백억원 이상이고 일정한 시설과 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허가요건의 완화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인력요건 등을 강화하며, 시행규칙으로 공인회계사나 신용조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10명 이상 확보하도록 함. 정보업의 3개 업무분야인 신용조사와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 중에서 채권추심업무범위는 현재의 재산조사·변제추구·변제금 수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서 경매신청 및 소송의퇴대행을 추가함(재정경제원, 서울신문 97.5.8, 9면).

■ 변호사 업무영역의 침해

- 현행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재산조사·변제의 추구·변제금 수령대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실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법원에 대한 신청대리, 변호사에 대한 법적 절차, 의뢰대행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법무사 및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신용정보회사에 변호사의 권능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폭력조직이나 고리대금업자, 사건브로커 등에 의하여 악용될 수도 있음(법률신문 해설, 97.5.29, 1면).

※ 「입법의견조사」 제94-4호(88면)·제94-6호(97~98면) 참조

『여신전문금융
업법(가칭)』
제정의견

-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규제 완화
 -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모든 여신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여신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신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경쟁력의 상실시는 증금 등의 타 금융업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도록 함. 감독에 있어서는 등록업종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중대한 사항은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하고, 인가제로 운용되는 신용카드업은 영업정지명령후 이의 불이행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기관의 난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비한 감독기능의 정비가 요망됨(한국경제신문 해설, 97.5.2, 4면).

『중소기업은행
법』 개정의견

-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 정부 보유 중소기업은행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2분의 1이상 출자 의무조항을 삭제하며, 기업은행을 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하고, 비상임이사장제, 비상임이사제를 폐지하고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로만 임원진을 구성하며, 법정자본금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금융채의 발행한도를 20배 확대하도록 함(당정, 문화일보 해설 97.5.7, 11면).

『증권거래법』

개정 의견

■ M&A의 부작용 예방

- 적대적 M&A의 부작용은 ①M&A에 대응하는 지분관리활동으로 기업경영력을 분산하여 안정경영권의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②M&A가 투기화될 경우 증권시장의 불안과 소액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고, 건전한 M&A시장의 형성보다는 증권시장의 '머니게임화'가 우려되며, ③ M&A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한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하여 국내자본의 유출 및 국내증시 교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M&A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M&A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을 보완하여 편법적인 M&A활동의 자제를 위한 관련규정의 엄격 적용과, 불량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키고, 적대적 M&A에 대하여는 대기업집단에 예외를 인정하여 상호주보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함(김태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사, 한국경제신문 해설, 97.3.13, 9면).
- 현재 국내에는 M&A에 관한 규제·허용·절차·신고요식·범위·기법 등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인 규정이 없고, M&A를 '일상적 상행위'로 규정하여 『상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서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외국인에 의한 M&A는 『외국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외자도입법』에서 '외국인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류·업종·종목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투자·거래방법만 언급하고 제재방안을 구비하지 못한바, 외국인투자자를 이용한 불공정·불투명한 적대적 M&A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 '외국 증권관계법을 위반한 자국민을 소환·조사할 수 있다'는 '상호주의' 규정을 삽입하여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시민의 신문 해설, 97.3.17 5면).

■ 전환사채제도의 개선

- 전환사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①전환가격을 시가의 1백% 이상으로 하여 기존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전환기간도 발행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인수합병분쟁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며, ②발행한도를 설정하여 무제한 발행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③사모전환사채발행은 가급적 규제하고 공모전환사채도 피해발생시 피해주주들이 주간사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서울경제신문 해설, 97.3.3, 5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49면)·제7호(66면)·제9호(102~103면)·제12호(89면)·제13호(75~77면)·제96-2호(55~56면) 참조

『지역신용보증
조합법(가칭)』
제정의견

■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원·세제지원

- 지역신용보증조합이 『민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는 달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여건속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이자소득세를 감면하고, 일부 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하며,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도록 함(한국경제신문 해설 97.4.22, 4면).

『한국산업은행
법』 개정의견

■ 업무범위의 확대

- 현재 자금대출업체에만 한정하고 있는 환전,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일반인까지로 확대하고, 발행시장에서의 주식인수업

무외에 유통시장을 통한 주식투자업무를 추가하고, 국채 및 통화안정채권 인수로 한정하고 있는 여유자금 운용방법도 완전자율화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당정, 문화일보 해설 97.5.7, 11면).

통상 · 산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역경제개발
 - 수도권 외곽지역에서의 공단설립 허용은 수도권에 위치한 첨단산업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양하게 하여 지방산업단지분양의 악재로 작용하고, 지역경제발전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공단설립은 지역특성에 적정하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게 개발되어져야 함(배달환경연구소·대전상공회의소, 동양일보 해설 97.5.24).
 -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공장입지기준과 건축기간, 사후관리 등이 상이하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중 『지방재정법』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경우 국유재산부지 매입이 불가능하므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산업용지나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개별공장입지 허용규모를 15제곱미터 미만에서 지역실정에 맞추어 허용규모 면적을 늘려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공장설립과 증설을 탄력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함(동양일보 해설 97.5.31).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개정요건**

- 통신서비스의 다단계 판매여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2항은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통신서비스의 다단계 판매는 그 과정에서 소유권을 여전히 통신서비스업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위탁과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는 바, 개정이 요망됨 (전자신문 해설 97.3.28).
 - ※ 「입법의견조사」 제1호(48~49면)·제8호(92면)·제94-3호(100~101면)·제94-4호(85~86면)·제95-4호(77면)·제96-2호(53면)·제97-1호(39면) 참조

**『벤처기업육성
을위한특별조
치법(가칭)』
제정의견**

- 벤처기업육성입법의 필요성
 - 대기업중심의 대규모 생산방식으로는 경제활력의 회복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모든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창업투자회사·조합 및 상담회사의 업무와 등록요건, 다른 법률의 창업관련 인·허가 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는 창업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벤처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바,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여 ①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조달확대를 위해서 벤처캐피탈 기능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②기술인력·기술개발 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각 부처가 시행중인 시책이 유기적으로 활용되도록 종합화하며, ③대규모 설비위주 또는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경제성장기에 만들어진 입지관련 정부 규제를 환경친화적·토지절약적·기

술·지식집약형 벤처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벤처기업의 입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배제하여야 함(산업연구원정책해설 자료, 국민경제연구소 경제정책정보 97.5.13).

■ 국립학교설치령의 부설 연구소 제한규정

- 『국립학교설치령』은 부설연구소가 신산업기술을 개발하여도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예산보조를 받은 소속직원이 개발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고에 귀속한다'는 『특허법』 조항을 근거로 부설기관 및 소속교수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금지하여 기업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서, 국책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특허출원의 복잡한 절차, 고비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벤처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관련조항의 검토가 요망됨(세계일보 기획·연재, 97.4.17, 18면).

『산업표준화법』
개정 의견

■ KS표준허가제 인증제로 전환

- 표준화 업무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①KS표준허가(승인)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②인증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③규격표시명령제도를 폐지하고 잠정표준제도를 도입하며, ④국제표준화 업무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함(통상산업부, 전자신문 해설 97.3.3).

※ 「입법의견조사」 제94-2호(97년) 참조

『석탄산업법』
개정 의견

■ 폐광의 재개발 허가

- 폐광으로 광업권이 소멸된 일부 광구는 가행탄광들의 광구보다 채탄여건이 좋지만 사장되고 있는 바,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를 재개발할 수 있도록 법개정하고 광원들의 채탄환경과 채탄능률이 개선되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함(전국 광산노동조합연맹, 강원일보 97.3.14).

농림 · 해양

『수산업법』 개정요건

- 수산업법상 비효율적 내용의 재검토
 - 어장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하에서만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 郡조정심의위원회 · 道조정위원회의 심의 →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어장개발 면허 · 어장면적의 제한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함(완도지역주민, 무등일보 97.5.13).

건설 · 교통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개정요건

- 시공기술사의 전문감리 허용 추진
 - 현재 건축사가 대표일 경우에 한하여 건축전문감리업이 허용되는 것을 특급감리원(건축시공기술사 등)이나 20년 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인들도 건축전문감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함(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 97.3.25).
 - 현행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상주감리대상 이외의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를 설계자가 행함에 따라 형식적인 감리가 진행되고, 무면허 시공자의 부실시공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 감리의 분류와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 업무에 대하여 시공경험이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감리자를 지정하고,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특수한 공법

이 적용되는 감리는 설계자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경기도, 서울경제신문 97.3.25).

- 현행법은 시공품질을 감독하는 '시공감리'만을 규정하고, 그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사하는 '설계감리'는 개념조차 불명확하므로 법개정이 요망됨(건축계·감리업계, 서울경제신문 97.3.25).

※ 「입법의견조사」 제12호(94면)·제95-2호(109면)·제95-3호(98~99면) 참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개정의견

- 개발제한구역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현실화
-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는 수용될 경우 용도제한에 따른 시가하락이 예상되는 바, 인근 유사토지가격을 감안한 적정보상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여야 함(대구광역시, 영남일보 97.5.2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개정의견

- 주택개량 법규개정 시급
- 농어촌주택을 개량할 목적으로 시행중인 융자금지원제도가 농어촌 주택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제한 규정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된 일부 읍·면의 소재지 및 시가지 변두리가 사실상 농촌지역에 있음에도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의 개정이 시급함(광주일보 해설, 97.4.21).

『도시계획법』 개정의견

- 토지분할 허가제의 개선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의 토지분할과는 달리 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형평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의 차원에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제주일보 해설, 97.5.15).

※ 「입법의견조사」 제94-5호(121면)·제95-2호(110면)·제96-1호(40~41면) 참조

『도시재개발법』
개정요건

- 자치구 주택재개발의 비용부담
 - 자치구가 재개발구역내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재개발사업자체의 침체가 우려되므로, 비용부담과 관련한 법개정이 요망됨(무등일보 해설, 97.4.4).

『사찰부동산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종단소속사찰의 보존토지 처분금지
 - 『사찰부동산관리법(가칭)』을 제정하여 종단소속사찰이 소유하는 토지 중 보존토지는 일절 처분을 금지하고, 토지매각의 경우 대금의 20%를 종단에 납입하도록 하며, 총무원에 '중앙부동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해마다 갱신하도록 함(종단, 영남일보 97.4.3).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
률』 개정요건

- 승강기 관련 규제법규의 일원화
 - ①승강기의 설치는 승객용의 경우 『승강기제조및설치에관한법』으로, 화물용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장애인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 되며, 비상용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등 승강기 용도마다 관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규정간에도 설치기준이 상충되는 등의 업무상의 비효율이 초래되는 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승강기 설치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건설업법』에 의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이중 규제를 받아온 바, 설치공사업도 제조업 및 보

수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로 전환하여야 함(한국엘리베이터 협회, 전자신문 97.3.3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자전거이용 관련법규의 재정비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5조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는 차도)에서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7조는 '자동차운전자는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교통사고 등의 문제발생시 자전거운전자와 자동차운전자간에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대부분 인도에 만들어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현실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에 대비한 명문의 규정이 불비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이의 보완이 요망됨(제주일보 해설, 97.3.14).

※ 「입법의견조사」 제94-5호(123~124면) 참조

『차고지확보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주차공간의 확보
-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시 차량 진·출입이 곤란하므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함(대구시, 영남일보 97.5.27).

※ 「입법의견조사」 제13호(89면) 참조

과학기술 · 정보통신

『전기공사업법』 개정의견

- 전기공사시장의 개방대비
-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국내 전기공사 시

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하고자 전기공사 영업의 구역제한을 철폐하여 면허소지자는 전국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5년의 면허 유효기간 제도나 입찰자격 제한 등은 폐지하며, 수급한도액을 대폭 개선하도록 함(통상산업부, 전자신문 97.3.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
의견**

-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의 개선
 - 단편적인 승인에 머물고 있는 형식승인이 모든 제품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현재의 형식승인제도를 민간주도의 새로운 안전규격승인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법개정하여 ①대상기기 선정기준을 나열식에서 포괄식으로 전환하여 대상품목을 정부가 일일이 고시하는 대신에 '일정 전압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여 신제품, 복합제품 등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②'카테고리 인증'을 일부 회로가 변경된 품목까지 포함하는 '모델별 인증'으로 변경·조정하며, ③시험 및 인증비용을 현실화하여 정확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전자신문 해설 97.4.7).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의견**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행 통신사업자의 구분을 ①통신설비의 보유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등록하면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하며, ②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정비하여 'WTO양허안'처럼 99년부터 한국통신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며, ③전기통신요금을 자율화하여 현행 '신고원칙, 인가예외제'를 '완전신고제'로 바꾸어 정부의 사전규제를 철폐하되,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및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시행령』이 전화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④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이나 부당하고 불공정한 요금의 책정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는 이용자나 타사업자의 신고로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장관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함(전자신문 해설 97.5.10).

※ 「입법의견조사」 제1호(54~55면)·제3호(69~70면)·제94-6호(110면)·제95-2호(115~116면) 참조

환 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대기업 환경보전법 위반시 과징금 징수
 -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법령 위반시 조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징수하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자 함(환경부, 무등일보 97.4.23).

※ 「입법의견조사」 제94-6호(111~113면) 참조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수질개선의 보완
 - 물관리의 추세가 수량확보에서 수질문제로 변화하면서 상수원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상수원 보호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여 ①오염원인자의 부담원칙으로 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부담의 합의를 도출하고, ②『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 등 기존규제와의 중복을 피하여 상수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③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하여 자치단체간의 경계구역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의 돌

발적인 사고를 감시하고 수질오염원이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함. 수질의 유지를 위한 상시체크는 자치단체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수질오염측정은 자동측정망에 의한 상시측정 보다 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한 수동측정방법에 의함이 바람직할 것임(조용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앙일보 97.5.6, 7면).

※ 「입법의견조사」 제97-1호(44면) 참조

**쓰레기원천감
량관련 입법
의견**

- 포장 간소화와 재이용의 장려
- 제품의 인도자인 생산자나 공급자로 하여금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까지도 책임지도록 하고, 무포장원칙과 포장 폐기물 회수제도를 강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포장 간소화 노력을 제고시키며, 제품포장의 표준화·규격화를 통한 포장용기의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재이용을 실천하는 시민에게는 '녹색증명서'를 발급하여 공공요금의 할인혜택을 주도록 함(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그린웨이 리운동연합 개최 『쓰레기 원천감량에 관한 대책과 법제』 세미나, 시민의 신문 97.4.28,12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의견**

- 폐기물의 사후관리 및 책임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매립이후에 매립주체가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법률인 『오물청소법』은 폐기물매립 허가조건만 있고 사후관리 및 책임에 대한 법규가 미비한 바, 『폐기물관리법』 시행전에 적법하게 매립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및 책임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국제신문 해설 97.3.28).

※ 「입법의견조사」 제3호(72면)·제94-6호(114면)·제95-1호(98면)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폐기물처리지역 편의시설 의무화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이 주민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대표·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협의체가 편의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영향지역을 지원협의체에서 직접 조사·결정하되 필요시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결정이 가능하게 하며, 지원협의체의 요구시는 지역주민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의 감시가 가능하게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공모 등에 의하여 입지후보지를 파악한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지를 선정하되,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을 조사·의뢰하도록 함(제주일보 해설, 97.5.13).

※ 「입법의견조사」 제1호(56면)·제13호(95~96면)·제94-6호(114면)·제95-2호(120면) 참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기업의 환경개선 참여 촉진·유도
 - 생산공정의 효율성은 '자원의 생산성 증대 → 오염물질의 발생 감소 → 생산원가의 절감 → 기업의 수익성 증대 → 국제경쟁력 향상'을 특성으로 하므로, 규제위주의 행정을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행정으로 전환하여 ①환경친화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산업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다양화하고, ②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한 기술지원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③ 대기업이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환경성 평가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환경보전노력을 유도하고, ④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화학·전기·

전자·섬유·피혁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모델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⑤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협력업체 및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동반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정진승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서울경제신문 97.5.27, 21면).

※ 「입법의견조사」 제95-1호(99면)·제96-2호(76면) 참조

보건·복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견

- 국민연금제도의 현실화
 - 소액의 보험료에 비교하여 많은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현실화하여, 보험료 납부액을 조정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수급의 개시일을 조정하도록 함(사회보장심의위원회, 한국경제신문 97.5.17, 2면).

- 연금기금 저리운용규정의 삭제
 - 연금기금은 여유자금이 아니고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아서도 안되는 바, 현재 적용된 국민연금 약 22조원의 66%인 15조원이 시중금리보다 약 1.5% 낮은 금리로 수익될 때 노령연금개시연도인 2008년까지 손실추계만 2조2천5백억원이 넘게 되어, 『국민연금법』 제8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바, 연금보험 재정의 보강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이상광 숙명여대 교수, 동아일보 97.5.29, 39면).

※ 「입법의견조사」 제96-2호(77면) 참조

**복권종합관리
를 위한 입법
의견**

■ 복권청 설립

- 복지·환경·통일 등의 중대한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 정부 부처는 경쟁적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위 사업이 재원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복권 발행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할 단일법률과 복권청의 부재로 인함이며, 결과적으로 조성된 재원이 각 부처의 재원부족을 편법적으로 보충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바, 복권을 종합관리할 법률과 기관을 설치하여 ①복권의 발행목적이나 그 운영방법 등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②법률에 의거하여 복권의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복권청을 설치하며, ③복권의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하여 후진적인 추첨식이나 즉석식만이 아닌 전자복권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계의 참여 유도 및 노인층·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④복권간의 경쟁에서 초래되는 판매율 저조와 과도한 광고비, 유통비의 감소를 도모함(유재건 국회의원회의 부총재, 월간『말』 97년 5월호).

**『생활보호법』
개정 의견**

■ 생활보호대상자지원의 확대

-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하여 온 식비와 의복비 외에 주거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의 교육 기회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 수업료 외에 입학금과 각종 학용품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생계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극빈 저소득층 △보호대상자의 봉양·양육·간병으로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장기치료자·부양의무자·부양기피로 생활이 어려운 자 △환금성이 없는 자산소유자 등으로 확대함(당정, 국제신문 97.5.26, 2면).

『약사법』 개정
의견

- 의약품 표준소매가제의 존폐
 - 『약사법』에는 표준소매가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표준소매가보다 30% 이상은 할인해서 팔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의약품의 가격이 이중성을 띠게 됨(재정경제원, 서울 97.5.5, 7면).
 - 의약품의 가격표시제를 폐지하면 약국 또는 지역간에 가격이 달리 형성되어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의약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의약품 가격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질서가 문란하게 되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의 표준소매가제를 유지하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론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보건복지부, 서울 97.5.5, 7면).
- ※ 「입법의견조사」 제10호(98~99면) · 제11호(99~100면) · 제12호(103~105면) · 제13호(91면) 참조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개정 의견

-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제정의 목적과 형평성에 비추어서, 한의사들에게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여 법규상의 결함을 치유하도록 함(보건복지부, 매일신문 97.4.21).

『의료법』 개정
의견

- 의료행위의 법적 개념 명확화
 - 의료행위의 법적 개념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의료나 건강권에 대한 기본개념 및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고, 건강문제가 국민 개개인의 문제인지 국가·사회의 책임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문화된 조항의 개정과, 의료이용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야 함(무등일보 해설, 97.5.17).

※ 「입법의견조사」 제3호(73~74면)·제4호(40면)·제6호(100면)·제7호(71면)·제94-3호(123~124면)·제95-2호(119면) 참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장기적출로 인한 사망시 살인죄 처벌
- 장기이식정보센터는 장기이식에 관한 정보만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장기이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므로 그 명칭을 ‘장기이식관리본부’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법안 제45조 ‘형법의 적용’은 ‘벌칙’으로 하여 제1항에서 뇌사판정을 허위로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과실로 뇌사판정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3항에서는 뇌사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임을 알면서 장기를 적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대한변협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법률신문 97.5.12, 9면).

※ 「입법의견조사」 제94-2호(112~113면)·제94-5호(128면)·제95-2호(119~120면)·제96-1호(46~47면)·제96-2호(81면)·제96-3호(74~75면)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장애인 편의시설등 설치위원회 설립
- ①건물신축 및 기존건물의 증·개축시에 기존 건물에 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2~7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기존의 건물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②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 중전보다

하향조정된 불법주차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③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인 기구의 설치와 함께 편의시설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판정할 수 있는 사전검증제의 도입과 집행·감독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함(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일보 97.4.3).

※ 「입법의견조사」 제8호(85면)·제94-3호(97~98면)·제97-1호(46면) 참조

『장애인복지법』
개정 의견

■ 장애인 인정범위 확대

- 실제로 정상생활이 어려운 한쪽 눈 실명자, 신부전증 환자, 정신질환자, 고혈압 환자에 까지 장애인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도록 법개정하여야 함(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일보 97.3.10).

■ 장애인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통합

- 장애의 범주는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신지체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데, 척추만후증(굽추)질환자와 같은 명백한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고, 정신질환자나 신장병 등 내부기능장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 ②장애등급판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 바, 『장애인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장애등급을 통합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와 『산업재해보상법』의 13,14급을 제외한 나머지 12등급을 두 등급씩 일치·조절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꾀함. 등급별로 시책이 상이하여 야기되는 판정시비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판정이 보다 엄정하므로, 두 법을 통합·적용하면 이같은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이북남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 부산일보, 97.4.3).

※ 「입법의견조사」제4호(29면)·제6호(78면)·제13호(65~66면)참조

『장애인의사회
참여에대한차별
금지법(가칭)』
제정의견

-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고,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신체형까지도 부과하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함(보건복지부, 서울신문 97.4.30, 22면).

『풍속영업의규
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심야영업 법규강화
- 심야영업 업소에 대한 과징금부과 액수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미납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납부가 연체되더라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강제징수도 어려운 바,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체납한 업소는 누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함(부산일보, 97.5.19).

법원 · 법무

『국가기밀보호
법(가칭)』
제정의견

- 대외비의 외부유출차단
- 군사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데 비하여 행정부처 등에서 다루는 기밀은 보호할 장치가 없는 바, 『국가기밀보호법(가칭)』을 제정하여 대외비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권영해 안기부장, 문화일보 97.3.12, 1면).

『국가를당사자
로하는소송에
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송수행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과 『인지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동일하게 관계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인지

첨부와 공탁을 생략하도록 함(전국 5개 광역시 중심구청장, 무등일보 97.4.4).

『국가안전기획
부법』 개정
의견

- 안기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안기부가 국가안보 보다는 권력보위를 위하여 기능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바, 안기부의 권한을 전면 축소·재조정하고 안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함. 현재의 對안기부 통제 장치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안기부장의 국회출석, 답변제도' 등이 있는데, ①안기부의 예산은 비공개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은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안기부의 예산중에서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안기부 예산의 정확한 파악과 사용에 대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②안기부장의 국회출석·답변제도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안기부장의 국회출석 증언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안기부장의 출석·답변거부권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바, 현행법상 국회정보위원회에 의한 안기부 통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음. 안기부를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정보기관, 인권과 안보를 위한 국가기구화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함(천정배 국회의원의 의원, 월간『말』, 97년 5월호).

『민사소송법』
개정 의견

- 민사 집중심리 전면도입
- 변론기일에 쟁점사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고 심리를 종결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여 민사소송의 질

차를 간소화하고, 고등법원 이상의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할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자력자일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한겨레신문 해설 97.3.8, 26면).

※ 「입법의견조사」 제4호(44~45면) · 제6호(102~103면) · 제97-1호(47면) 참조

『소년법』 개정
의견

■ 청소년범죄 규율대상의 조정

- 현행 『소년법』이 청소년의 정신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전체 청소년 범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18세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아닌 일반형사범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법률신문 해설 97.5.19, 1면).

※ 「입법의견조사」 제95-4호(92면) · 제96-1호(50면) · 제96-3호(83~84면) 참조

『자금세탁방지
에관한법률(가
칭)』 제정의견

■ 금융실명제의 보완

- 우리경제의 규모와 경제개방의 확대 이전에 금융실명제를 보완하여 ①거액의 현금거래는 국세청에 사전통보하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②대가성 없이 받은 이른바 '떡값'은 돈세탁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은 명백한 잘못으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의 정비로 시정하고, ③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전인지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한국경제신문 해설, 97.5.31, 9면).

■ 변칙 실명전환 처벌법규 추진

- 금융실명제의 보완과 관련하여 ①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부분은 실명제 대체입법으로,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은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가칭)』로 보완하여 실명전환시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에게 실질소유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전주의 확인절차시에 허위신고가 드러날 경우 예금주나 공모한 금융기관 직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둬. ②마약·도박·뇌물·횡령·세금포탈·밀수·조직범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는데 개입한 금융기관과 직원 및 고객을 처벌하고, ③ 금융거래 규모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이나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할 경우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법무부, 무등일보, 97.4.18).

■ 자금세탁방지법안의 보완

- 금융실명제 보완의 핵심 방향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산업자금화 할 수 있도록 함. 고액 현금거래를 영장없이 열람, 등사하게 함은 사후조치가 될 뿐으로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현금거래 기록보관 대상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것인 바, 이의 보완이 요망됨(서울경제신문 해설, 97.5.31).

※ <참고자료 2>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참조

※ 「입법의견조사」 제94-1호(70면) 참조

세탁방지금지법안요지(동아일보 97.5.22, 6면)

| 구 분 | 내 용 | 위반시 처벌규정 |
|----------------------------|--|--|
| 자금세탁이 금지되는 특정범죄 및 불법자금의 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나 중재인의 직무관련 수뢰 및 사전·사후 수뢰, 알선수뢰, 제3자 뇌물제공(형법 제129~13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자의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 후원회모금한도초과, 가차명기탁등 불법정치자금(정치자금법 제30조) - 수출입가격이 1천만원이상인 관세법위반죄 및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8조)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 사금융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7조) - 범죄단체관련 자금(폭력행위등처벌법 제4,5조) | |
| 자금세탁행위의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자금 등의 성질·소재·출처·귀속관계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 금지 - 특정범죄에 제공하거나 연간 2억원이상의 조세포탈죄를 범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성질·소재·출처·귀속관계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금지 | <p>7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도 처벌</p> <p>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p> |
| 고액현금거래 기록 보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은 일정금액이상(대통령령으로 규정)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5년이상 보존 - 검찰청과 국세청, 관세청이 수사조사, 기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융실명법의 규정(거래비밀보장)에도 불구하고, 현금거래기록의 열람·등사 가능 | <p>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p> |

| | | |
|------------|---|-----------------------|
| 금융기관 등의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자금 등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실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검찰청에 신고 - 이의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관계자들에게 누설금지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

**특별검사제 도
입관련 입법
의견**

- 권력형 비리에 특별검사제 도입
 -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를 구성하여 국가기관, 정부기관을 배제한 검찰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김주원 변호사, 참여연대 주최 『특별검사제도입을 위한 토론회』, 시민의 신문 97.5.12, 10면).
 - 권력형 비리발생의 경우에 검찰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지기 위하여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헌법기구에 의한 절차를 거친 권위있는 기관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한인섭 서울대학교수·천정배 국회의원의 의원, 참여연대 주최 『특별검사제도입을 위한 토론회』, 시민의 신문 97.5.12, 10면).
- ※ 「입법의견조사」 제4호(42~43면) 참조

**특허법원관련
입법의견**

- 특허법원의 운영방향
 - ①판사 독자적으로 특허관련 소송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심리관 및 기술고문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술판사제를 도입하여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②장기적으로는 특허법원이 사건의 종류를 막론하고 기술과 관련된 사실판단능력이 핵심사항인 특허관련사건 모두를 관할하도록 '특허법원관할집중제'의 채택이 검토되어야 함(박동희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자신문 97.5.27).

『형법』 개정
의견

-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 남성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여성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남존여비의 봉건주의적·남성우월주의적 입법 잔재인 바, 폐지되어야 함(김영철 서울지검 부장판사, 문확일보 97.3.5, 31면).
- ※ 「입법의견조사」 제1호(58면)·제94-6호(120면)·제95-1호(103면)·제95-3호(107면)·제96-1호(51면)·제96-3호(87~88면)·제97-1호(48면) 참조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

-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전과자 양산
 - 종전의 재판부는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구속기간을 처벌로 감안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죄질이 나쁜 피고인이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징벌효과가 약화되고 일반인의 법감정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1년 이하의 단기 징역형 선고가 급증하면서 가벼운 죄가 결과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형량의 역전현상'을 빚고 있어서, △징역형이 단기형이라 하여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실효되지 않아 전과자를 양산하고 △출소후 5년내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여 집행유예 5년의 병과효과가 있으며 △기결수들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따른 부작용 및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는 바, 단기징역형 선고시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고 복역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하는 일부 집행유예제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함(부산고법·부산지법, 국제신문 97.4.23).

■ 일부 집행유예제 도입

- 불구속재판의 확대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제재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한 일정기간의 형을 집행하고 나머지 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검토함(대법원, 동아일보 97.3.11, 47면).

※ 「입법의견조사」 제8호(121~122면) · 제12호(110면) · 제13호(105~106면) · 제92-2호(116~117면) · 제94-1호(85면) · 제94-3호(134면) · 제94-5호(131~132면) · 제94-6호(120~121면) · 제95-2호(127~128면) · 제95-3호(108면) · 제96-3호(89~90면) · 제97-1호(48~49면) 참조

〈참고자료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

1. 금융실명제 보완의 기본방향

- 긴급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금융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 시키기 위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입법 하면서
 -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과 불안감 해소, 중소기업용 자금 등에 대한 한시적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
- 이와 동시에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자금 세탁행위는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실명을 전제로 성립되는 보험계약, 실명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절차 생략
 -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송금 등의 무통장입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실명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둠.
- 금융거래에 관한 불안감 해소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40%)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하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자료는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
- 상속·증여의 경우 상속인에 대한 일괄조회제도 도입 등의 보완으로 악용방지

- 실명전환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30세 미만 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

○ 이미 실명전환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여 형평 유지

-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실명전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고율 60%를 현재 부과율 수준인 40%로 조정

○ 중소기업용 자금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여 중소기업에 위한 산업자금화 지원

- 출처조사 면제대상 : 중소기업 창업출자 및 증자자금, 벤처자금,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에의 출자금

다만, 30세 미만 자가 출자하는 경우 및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는 제외

- 출자 부담금 부과 : 건당 출자액 10억원 이하분 10%

건당 출자액 10억원 초과분 20%

다만, 중소기업에의 출자금 및 벤처자금은 투자리스크가 큰 점 등을 고려, 출자 부담금 면제

부담금은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사용

- 6개월간 시행하되(필요시 1회 연장) 5년의 의무출자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사후관리

(재정경제원 보도자료, 97.5.30 : 국민경제연구소 경제정책정보)

〈참고자료 2〉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

- 금융기관을 이용한 뇌물·조직범죄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세탁행위(불법자금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 '특정범죄'의 범위
 - 공무원의 뇌물수수
 - 국가·지자체 회계관계직원 등의 횡령·배임
 - 불법정치자금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세·관세포탈 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
 - 폭력조직범죄 등
- 금융기관의 고액현금거래 기록·보존의무
 - 금융기관은 일정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5년이상 그 기록을 보존
 - 검찰 및 세무관서는 업무상 필요시 기록·보존된 현금거래 정보의 열람·등사 가능
- 금융기관은 금융자산이 불법자금 등임을 안 경우 검찰에 신고
-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처벌
 -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 7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특정범죄 제공 또는 특가법 상의 조세포탈 목적의 세탁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자금세탁 예비·음모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불법자금의 미신고 및 신고사실 누설, 기록보존 의무위반 : 1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재정경제원 보도자료, 97.5.30 : 국민경제연구소 경제정책정보 참조)

〈참고자료 3〉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조정안 대비표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조정안 대비표

| 구 분 | 현 행 | 금융개혁위원회안 | 최종 조정안 |
|------------------------------------|---|---|---|
| 1. 금통위의 위상 및 한은과의 관계 * 중앙은행의 목적 | ·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수립과 한은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시·감독 *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한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발전 | · 금통위를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결정 *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 금통위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 기구로, 특수법인인 한은을 그 집행기구로 함 * 금개위(안)과 동일 |
| 2. 금통위 및 한은의 설치근거법 | · 한국은행법 | | 금통위 및 한국은행 설치근거로 '중앙은행법' 제정 |
| 3. 금통위의 권한과 기능 |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지시·감독 ·통화신용정책관련 업무 -한은대출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 -유동성 조절 -비은행 금융기관중 한은 당좌거래 대상 결정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은행의 건전성 규제 -정책집행의 지시·감독 및 주요 내부 경영사항 결정 ·통화신용정책 관련 업무 -한은대출 -금융기관 여신운용 -한은·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 -유동성 조절 -비은행 금융기관중 한은 당좌거래 대상 결정 -외화여수신 및 외국환포지션 관리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 유사업무 기준부과 |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시장참여자로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주기능으로 하고, 정부의 환율·외화여수신·외환포지션 정책에 대한 협의기능 수행 (註) ·통안증권 발행이나 RP 조작에 있어 개별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지도 방식 지양 ·재할인 제도의 정책금융적 성격 지양 -정부에 대한 협의 |

| 구 분 | 현 행 | 금융개혁위원회안 | 최종 조정안 |
|---------------|---|---|---|
| 4. 재정과 금융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이 수행하는 정책금융 -총액한도대출 제도 -점진적으로 재정으로 전환중인 정책금융(영농자금등) -폐지 또는 상환도래후 연장하지 않고 있는 정책금융 | | <p>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금융중 재정기능에 속하는 것은 최단기간내에 재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축소 정비</p> |
| 5. 중앙은행의 책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 연 2회 이상 보고 외에는 특별한 책임이 없음 | <p>금통위 의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짐 -이 목표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키지 못할 경우 금통위 의장과 상근위원은 임기전이라도 해임 사유가 됨</p> |
| 6. 중앙은행의 감독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감독원에서 은행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일반은행·특수은행·신탁계정에 대한 일부 건전성 지도·규제(채무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 한은과 당좌예금 거래약정을 체결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고서·자료 등 정보에 대하여 감독당국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요구권 · 금감위와 한국은행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건전성 규제내용을 조정하고 관련정보를 상호 제공하며 요청자료를 협조 | <p>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필요한 경우 감독기구에 대하여 특정분야 검사 및 그 결과 송부 요청권,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권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 보유</p> |

| 구 분 | 현 행 | 금융개혁위원회안 | 최종 조정안 |
|------------------------|---|---|--|
| 7. 한은부총재 임명 | · 한은 총재가 추천하여 금통위가 임명 | · 금통위 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 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임명 하는 순수한 집행기구로 함 |
| 8. 한은 정관 변경 | · 재경원장관 승인 | · 금통위 승인 | 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임명 하는 순수한 집행기구로 함 |
| 9. 금통위의장 임명 | · 재경원장관이 겸임 * 한은총재는 재경원장관 이 제청 | ·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 통령이 임명 |
| 10. 금통위 위원 임 기 | · 총재 4년(중임가능) · 위원 3년(중임가능) | · 의장 : 5년(대통령과 임 기 교차) · 위원 : 6년(단임) | 금통위의장의 임기는 5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단 위원은 연임가능 |
| 11. 금통위 위원 구 성 및 임명 | · 구성 : 9인(상근위원 없 음) -당연직 : 재경원장관·총 재 -임명직 : 재경원 장관 추 천 1인 농림부장관 추천 2인 통상산업부장관 추천 2 인 금융기간 추천 2인 · 임명직 위원은 대통령 임명 | · 구성 : 7인(상근위원 5 인) -당연직 : 의장(한은총재) 의장추천 1인(한은 부총 재) -임명직 : 재경원장관 추천 1인 금감위원장 추천 1인, 공 익·경제·금융계대표 각 1인 · 임명직 위원은 금통위 추 천, 대통령 임명(전원상 근) | 금통위위원은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금감위원장· 국회(공익대표)·대한상공 회회의소(경제계대표)·은행 연합회(금융계대표) 추천 각 1인을 대통령이 임명 |
| 12. 한은 감사임명 | · 재경원장관 임명 | · 재경원장관 추천, 금통위 임명 | 한은감사는 재경원장관 추 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 13. 기구 및 위치 | | · 총리소속으로 장관급 합 의제, 행정기구인 '금융감 독위원회' 설치 -위원장 : 장관급(총리제정, 대통령 임명) | 은행·증권·보험감독을 통 합하는 금융감독기구를 설 치 - 통합금융 감독기구는 금융 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권 으로 구성하되 전자는 총 리산하 정부기구로, 후자 는 특수법인으로 함 |

| 구 분 | 현 행 | 금융개혁위원회안 | 최종 조정안 |
|-----------------|-----|---|--|
| 14. 금융감독기구의 기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 및 시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금융규제 감독에 대한 심의·의결 -금융규제·감독관련 법령 제·개정 -설립인가·감독관련규정 제정 -금융감독원 지시·감독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운영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제재(위임업무) | <p>금융감독기구는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제재, 증권·선물시장 감시 기능 보유(단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설립인가권은 재경원이 보유)</p> |
| 15. 금감위 위원 임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임기 규정 없음 · 임명직 위원 : 5년 단임 | <p>금감위 위원장의 임기는 5년, 상근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단 위원은 연임 가능</p> |
| 16. 재정경제원 직제 개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원에는 금융정책업무의 일부, 외환·국제금융업무만 남게 됨 · 통합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설치 | <p>재경원은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환율정책, 국제금융기능 수행 통합 예금보험기구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p> |

(중앙일보 97.6.17. 28면 참조)

〈주요항목색인〉

| | |
|-----------------------------|----|
| (ㄱ) | |
| 개발제한구역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현실화 | 43 |
| 공기업 경영효율화 방안 | 27 |
| 공익근무요원 인력관리 불합리 | 17 |
| 공적기관의 법적용대상 포함 | 18 |
| 교내순찰경찰제 도입 | 25 |
| 교수재임용제 개선 | 23 |
|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 33 |
|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전과자 양산 | 61 |
| 국립학교설치령의 부설 연구소 제한규정 | 41 |
| 국민연금제도의 현실화 | 50 |
| 권력형 비리에 특별검사제 도입 | 60 |
| 규제심사원 설치 | 28 |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용대상 | 25 |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 31 |
|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문제점 | 30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 | 32 |
| 금융실명제의 보완 | 57 |
| 기업의 환경개선 참여 촉진·유도 | 49 |
| (ㄴ) | |
| 노동위원회의 발전방향 | 25 |

(ㄷ)

| | |
|---------------------------|----|
| 단위신협의 책임경영제 도입 | 34 |
| 대기업환경보전법 위반시 과징금 징수 | 47 |
| 대복지원 자의적 간섭은 쟁송대상 | 16 |
| 대외비의 외부유출차단 | 55 |
| 대통령 권한의 축소 | 15 |
| 대통령비서실기능의 제도화 | 15 |
| 도강세 도입 여부 | 32 |

(ㄹ)

| | |
|-----------------------|----|
| 문화재 사전 지표조사제 도입 | 22 |
| 민간 개인정보 법으로 보호 | 18 |
| 민사 집중심리 전면도입 | 56 |
| 민원 1회 방문처리 | 18 |

(ㄴ)

| | |
|-----------------------|----|
| 벤처기업육성입법의 필요성 | 40 |
| 변칙 실명전환 처벌법규 추진 | 58 |
| 변호사 업무영역의 침해 | 35 |
| 보험사의 주주제한 폐지 | 31 |
| 복권청 설립 | 51 |
| 부패방지의 법적보완 | 12 |

(ㄷ)

| | |
|----------------------------------|----|
| 4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 기본방향 | 28 |
|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6 |
| 생활보호대상자지원의 확대 | 51 |
| 선거공영제 확대 | 12 |
| 소기업의 정책적 지원 활성화 | 34 |

| | |
|----------------------------|----|
| 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 20 |
| 수산업법상 비효율적 내용의 재검토 | 42 |
| 수질개선의 보완 | 47 |
| 승강기 관련 규제법규의 일원화 | 44 |
| 시공기술사의 전문감리 허용 추진 | 42 |
|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 완화 | 35 |
| 심야영업 법규강화 | 55 |

(○)

| | |
|---------------------------------|----|
| 안기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56 |
| 업무범위의 확대 | 38 |
| M&A의 부작용 예방 | 37 |
|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규제 완화 | 36 |
| 연금기금 저리운용규정의 삭제 | 50 |
| 영업시간의 자율화 | 23 |
| 예규시정요구권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 | 19 |
| 5.18 유공자 예우 | 16 |
| 의료행위의 법적개념 명확화 | 52 |
| 의약품 표준소매가제의 존폐 | 52 |
| 일부 집행유예제 도입 | 62 |

(ㄷ)

| | |
|---------------------------|----|
| 자금세탁방지법안의 보완 | 58 |
| 자전거이용 관련법규의 재정비 | 45 |
| 자치구 주택재개발의 비용부담 | 44 |
| 장기적출로 인한 사망시 살인죄 처벌 | 53 |
| 장애인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통합 | 54 |
|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 | 55 |
| 장애인 인정범위 확대 | 54 |
| 장애인 편의시설등 설치위원회 설립 | 53 |

| | |
|-------------------------------|----|
| 재산 불성실신고자 공개 | 13 |
| 전기공사시장의 개방대비 | 45 |
|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의 개선 | 46 |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의 주요내용 | 46 |
|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 20 |
| 전환사채제도의 개선 | 38 |
| 정치구조개선방안 비교 | 14 |
| 정치자금법의 개선 | 13 |
| 종단소속사찰의 보존토지 처분금지 | 44 |
| 주차공간의 확보 | 45 |
| 주택개량 법규개정 시급 | 43 |
| 준조세의 남발 억제 | 33 |
|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 36 |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30 |
| 중앙·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권 부여 | 21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대립 | 24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송수행 | 55 |
| 지역경제개발 | 39 |
|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원·세제지원 | 38 |
| 직업능력인증제 도입 | 24 |
| (ㄷ) | |
| 청문회제도의 개선 | 19 |
| 청소년범죄 규율대상의 조정 | 57 |
| (ㄹ) | |
| 카르텔 조장요소의 개선 | 32 |
| 카지노업장내 슬롯머신 설치 허용 | 22 |
| KS표준허가제 인증제로 전환 | 41 |

| | |
|-------------------------|----|
| (ㄷ) | |
| 토지분할 허가제의 개선 | 43 |
| 통신서비스의 다단계 판매여부 | 40 |
| 특허법원의 운영방향 | 60 |
| (ㄹ) | |
| 폐광의 재개발 허가 | 41 |
| 폐기물의 사후관리 및 책임 | 48 |
| 폐기물처리지역 편의시설 의무화 | 49 |
| 포장 간소화와 재이용의 장려 | 48 |
| (ㅎ) | |
|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 52 |
| 행정청의 재결불복 | 19 |
|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 61 |
| 휴대용 액정게임기의 판매 규제 | 23 |

입법의견조사 97-2 입법의견 동향분석

1997년 8월 25일 印刷

1997년 8월 30일 發行

發行人 朴 松 圭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東洋商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값 5,000 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23-1 93360

